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3.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송무심의관과 국제분쟁대응과의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의 업무종료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0. ~ 4.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에 따른”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15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0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의4.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6항에 따른 사범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장(제3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한시 정원

제37조(한시정원) 사할린동포 등 동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적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5. 4. 10.까지 별표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

별표 4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란 중 “관악구·광진구·강남구(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을 “관악구·광진구·강남구·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같은 란 중 “과천시·성남시·하남시”를 “과천시·성남시(서울공항은 제외한다)·하남시”로 하며, 같은 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란 중 “의왕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를 “의왕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 서울공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삭제한다.

별표 4의2 중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보호과
--------------	---------------

별표 5 중 총계 “772”를 “7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5”를 “736”으로 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을 “8”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72”를 “7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5”를 “736”으로 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을 “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6,668”을 “16,672”로 하고, 일반직 계 “16,668”을 “16,672”로 하며, 교위 “1,819”를 “1,820”으로, 교사 “5,635”를 “5,636”으로, 교도 “6,119”를 “6,121”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53”을 “454”로 하고, 일반직 계 “453”을 “454”로 하며, 공업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2,576”을 “2,582”로 하고, 일반직 계 “2,576”을 “2,582”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 “104”를 “105”로, 간호주사 “1”을 “2”로, 출입국관리서기 “686”을 “690”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2,576”을 “2,582”로 하고, 일반직 계 “2,576”을 “2,582”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 “116”을 “117”로, 간호주사 “1”을 “2”로, 출입국관리서기 “686”을 “690”으로 한다.

별표 12의3 및 별표 1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1호3)의 평가기간란 및 4)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3월 31일”을 각각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무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7조 관련)

1. 제37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4월 1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출입국관리주사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⑧ (생 략)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 다만, <u>울산출입 국·외국인사무소의</u> 심사과장 은 제15항에 따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김포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심사과장은 제 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 른 관리과장의 분장사항을, 청 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 사과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과 장의 분장사항 및 제15항에 따 른 조사과장의 분장사항을 각각 추가로 분장한다. 1. ~ 15. (생 략) <u><신 설></u> 16. (생 략)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 장한다. 1. ~ 3의3. (생 략) 4. (생 략)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u>울산출입 국·외국인사무소의</u> 심사과장은 <u>제1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u> <u>따른</u> ----- ----- ----- ----- ----- ----- ----- ----- -----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u> <u>관한 사항</u>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⑩ -----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 ⑫ (생략)

⑬ 보호과장은 제1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⑮ ~ ⑲ (생략)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③ (생략)

<신 설>

<신 설>

3의4.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 ⑫ (현행과 같음)

⑬ -----
-----.
다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과장은 제16항에 따른 사범과장의 분장사항과 제2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과장의 분장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⑮ ~ ⑲ (현행과 같음)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장 한시 정원

제37조(한시 정원) 사할린동포 등 동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적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u>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4. 10.까지 별표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u>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772</u>	• <u>773</u>	+1
•	•	•	
•	•	•	
일반직 계	<u>735</u>	<u>736</u>	+1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7</u>	<u>8</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772</u>	• <u>773</u>	+1
•	•	•	
•	•	•	
일반직 계	<u>735</u>	<u>736</u>	+1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7</u>	<u>8</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6,668</u>		<u>16,672</u>	+4	
일반직	계		<u>16,668</u>		<u>16,672</u>	+4	
	.		.		.		
	.		.		.		
교위			<u>1,819</u>		<u>1,820</u>	+1	
	.		.		.		
	.		.		.		
교사			<u>5,635</u>		<u>5,636</u>	+1	
	.		.		.		
	.		.		.		
교도			<u>6,119</u>		<u>6,121</u>	+2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53</u>	• <u>454</u>	+1
일반직 계	<u>453</u>	<u>454</u>	+1
•	•	•	
•	•	•	
공업주사보	<u>1</u>	<u>2</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576</u>	• <u>2,582</u>	+6
일반직 계	<u>2,576</u>	<u>2,582</u>	+6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04</u>	<u>105</u>	+1
•	•	•	
•	•	•	
간호주사	<u>1</u>	<u>2</u>	+1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686</u>	<u>690</u>	+4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576</u>	• <u>2,582</u>	+6
일반직 계	<u>2,576</u>	<u>2,582</u>	+6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16</u>	<u>117</u>	+1
•	•	•	
•	•	•	
간호주사	<u>1</u>	<u>2</u>	+1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686</u>	<u>690</u>	+4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법무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7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제37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2025년 4월 10일)	<신 설>		
총 계	<신 설>	<u>1</u>	+1
일반직계	<신 설>	<u>1</u>	+1
출입국관리주사	<신 설>	<u>1</u>	+1